

Policy and Law Report _Vol.13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6.07.~ 2022.06.12) -

June 13,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벤처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경제안보비서관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제도화 방안 ②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③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④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2022-06-07
	•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 -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 -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여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 구현 -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 ② 규제혁신 -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시켜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 예정	2022-06-09

부처	내용	일시
	③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비료(1,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 -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 약 4.0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 -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	
산업통상 자원부	•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전략과 과제」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전략과 과제」 주제로 연구용역 토론회를 개최함 또한 미중 패권경쟁 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역 혁신생태계 강화: 지역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허브 구축 *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인프라 확충, 경자구역의 스마트시티화, 기업지원 혁신인프라 확충 등 ② 글로벌 교류-협력거점 육성: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기능을 활성화 * 글로벌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 지원, 글로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 등 ③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정비: 경자구역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발전전략 추진여건 조성 * 경자구역 지구별 개발 효율성 제고, 경자구역 지정·해제 유연화, 자율적 사업기획·발굴 시스템 구축, 시장연계 맞춤형 기업지원 등	2022-06-0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u>(제2조제12호의2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6.10. 시행, 그 외 규정은 2022. 12. 11. 시행 예정)</u>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제2조제12호의2 신설) ②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제5항 신설, 제10조제1항제4호 등)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임원 구성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 (제22조의8제2항) ④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⑤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종전에는 분실 또는 도난된 장치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까지 포함하고 해당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금지함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2022-06-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12.11. 시행 예정)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제2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및 제10호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을 명시함 (제3조제1항) ③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제5조제2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④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 ⑤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수입량·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⑥ 청정수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의4 신설) ⑦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 (제25조의5 신설) ⑧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 또는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25조의6 신설)	2022-06-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⑨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의7 신설) ⑩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함 (제25조의8 신설) ⑪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인증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6.10. 시행) 자원순환보증금과 폐기물부담금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기·1회용 컵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022-06-07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3.7.1. 시행 예정, 부칙 제8조는 2022.6.10.부터 시행)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2022-06-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 (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②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③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제91조의18 신설) ④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제91조의20제2항 신설) ⑤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91조의21 신설) ⑥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부칙 제8조)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u>(2022.12.11.부터 시행 예정.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6.10.,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제57조의2, 제69조의4, 제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u>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된 중고자동차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2-06-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체부품 인증대상에서 자기인증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제30조의5제2항 삭제) ② 자동차의 제작 결함 등과 관련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제32조의2제6항 신설)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 (제47조의4제3항 및 제47조의7제3항 신설, 제47조의8제1항) ④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제57조제3항 및 제58조제3항) ⑤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함 (제57조제3항제2호) ⑥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57조의2제2항 및 제80조제5호의4 신설) ⑦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6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6.7. 시행, 부칙 제3조는 2023.1.1.부터 시행 예정)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 이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을 추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2호, 별표 1 제1호가목1, 별표 1 제3호다목 등)	2022-06-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u>약사법 일부개정</u>」 (2022.12.11. 시행 예정)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품목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도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최근 허가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고 모든 제조공정이 기존 허가사항과 동일하다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의적인 제조방법 임의 변경 및 허위 제조기록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함 (제38조의2 신설) ② 적합판정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적합판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 (제38조의3 신설) ③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임명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은 정기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함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신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 (제81조의3 신설)	2022-06-10
공정거래 위원회	• 「<u>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u>」 (2022.7.5. 시행 예정)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나 판촉행사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8709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의 경우 50퍼센트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한도가 포함 되도록 하는 한편,	2022-06-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백만원, 7백만원 및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3조의5 신설, 별표 5 제2호아목 신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6.8.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교육·연수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불공정한 거래상태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70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 이에 따라,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의2 및 별표 1 신설) -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강의실 등을 갖추고,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 등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지정일 직전 3년간 50개 이상의 공급업자나 100개 이상의 대리점에 대한 교육실적 또는 대리점거래 관련 30건 이상의 분쟁조정 실적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제18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 등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 및 금액을 확정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는 그 부과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022-06-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절차 (제18조의3 신설) -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 에 관한 업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절차에 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u>(2022.9.8. 시행 예정, 제14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u>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정보집합물*의 결합 신청 절차를 현실에 맞게 신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의 결합 신청 절차에 관한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수립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는 따로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 정보집합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나목) 신용정보회사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등에게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6-07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 6/7(화)~6/10(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2-06-0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하며,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유 추가 (안 제5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유에 추가함 ②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안 제40조제1항제20호) - 선박금융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함 ③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안 제84조제2항 및 제3항) -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10%p 상향 조정함	2022-06-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6/7(화)~6/10(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과 제37조제1항, 별표 1, 별표 2에 따라 김치·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커피와 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면세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는 단순가공식품의 단서조항이 삭제된 별표 1의2를 따르고,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23년말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품 중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24조 제11항 단서 신설) ② '23년말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37조 제1항 단서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6/7(화)~6/16(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2022-06-07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①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 의견 제시기간 : 6/3(금)~6/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	2022-06-0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u>」 사상 최악의 원자재가격 급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는 현실에 맞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조사결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실태조사를 보면 원재료가격 폭등에 따른 납품기업에 대기업 납품단가 반영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령까지 겹쳐 원자재 공급망에서 연쇄적인 가격 인상으로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며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미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요건과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이 제도들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임 헌법 제119조에서도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납품단가와 관련한 기업간 거래 규율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함. 이에 거래 당사자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 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조의6 신설 등)	2022-06-0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탄소국경세와 RE100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저한세의 존재로 세액공제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해당 산업의 특성상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뒤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안 제13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2022-06-03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연도별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의 영업비밀 처리 사건이 2018년 975건, 2019년 885건, 2020년 948건에 이를 정도로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최근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해당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국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영업비밀 국외 유출현황 및 근절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2제2항제8호 및 제18조의5 신설, 제18조제1항제1호)	2022-06-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 그 밖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6호·제6호의2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의2 신설)	2022-06-0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36조)	2022-06-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수출의 80%,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계 5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제조업의 혁신은 필수적임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생산성이 낮아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 전환 수준이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함 또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육성, 제조데이터의 생산·수집·가공·분석·공유·유통 등 중소기업 제조데이터에 특화된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이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부담이 높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②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스마트제조혁신심의위원회 운영, 지역에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 지정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2022-06-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산·학·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④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과 제조데이터의 제공계약을 지원하며,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⑤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갖는 기업이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육성함 (안 제20조) ⑥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함 (안 제21조) ⑦ 표준 보급·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 및 홍보,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지원, 금융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협회 설립 등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함 (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 제33조) ⑧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협력,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지원함 (안 제28조 및 제29조) ⑨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스마트제조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 ⑩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추진기관·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추진기관·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 및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이 편향되어 있어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노동정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그 부당이득에 더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고용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4호, 제28조제5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제28조제5항제2호) ②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을 받은 자에게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2제6항 신설)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에 노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개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 후단 및 제4호 신설)	2022-06-0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에 따라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안 법률 제 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2022-06-09
환경노동 위원회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전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 제정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조 공정에서의 원료·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용어 정의 (안 제2조) -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 “순환이용”을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활동으로 정의함 ② 기본원칙 (안 제3조) -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재생이용 하고, 재생이용 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함	2022-06-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자원생산성, 폐기물발생감량률, 순환원료사용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설정 및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자에게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함 ④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구축 및 운영 (안 제16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유리한 시설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⑤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환경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생산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천연자원 대체원료, 순환원료 등 사용을 의무화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제품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순환이용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순환이용이 어려운 동종의 제품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는 포장재 자체 순환이용 등 포장재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하는 포장재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시 사용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사업자와 협력하여 포장재 없는 매장 설치·운영 등 포장재 감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제품을 생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재고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도록 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 순환자원의 고시 (안 제25조) -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경우 순환자원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⑦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활용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신설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 관련규제를 신속히 확인하여 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의 일괄 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함 ⑧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개선 (안 제3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해당 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된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함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14(화) 14:00	제27차 「AI와 국회포럼」 - 인공지능(AI) 이미지 세계 어디까지 가능할까?	도서관 1회의실
	6/14(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6/16(목)	국외 현안리포트 - 주제: 2022 OECD 경제전망-한국	
	6/16(목)	최신 정책정보: 국외	
예산정책처	6/17(금)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입법조사처	6/14(화)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	
	주중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2건)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 -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	
	주중	「외국 입법·정책 분석」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독일의 경쟁법적 대응과 시사점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13(월) 14:00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4(화) 13:30	제 8차 K-바이오헬스 포럼 - 의료용 식품 제도의 필요성	전혜숙 의원실, (사)건강소비자연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14(화) 14:00	(제1회) 민간주도 탄소감축 포럼&위원회 출범식	김학용 의원실, SDX재단	국회도서관 강당
6/15(수) 10:00	콜센터 노동자 기본권 보장 입법연구 토론회	윤미향 의원실	입법조사처
6/15(수) 14:00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	이헌승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15(수) 14:00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서병수, 이상민, 권명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6/16(목) 10:00	국가정원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	김선교 의원실, 산림청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3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7(화)	현안입법 알리기 - 주민투표 활성화 방안 마련	
예산정책처	6/8(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6/9(목)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시사점	
	6/9(목)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북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지원 전망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8(수) 14:00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6/8(수) 14:00	지역방송과 「미디어 자치권」의 미래	김영식, 이상민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9(목) 10:00	에너지 산업에서의 기계공학의 역할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9(목) 14:00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 토론회	이철규,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변호사 |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변호사 |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